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

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(2025~2027)

2024. 12. 19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Ⅰ. 추진배경 및 의의 ····· 1

Ⅱ.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추진체계 ····· 4

Ⅲ. 공급망안정화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····· 6

1.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····· 6

2. 공급망 회복력 강화 ····· 13

3.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····· 25

4.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····· 34

Ⅳ. 추진기반 ····· 40

Ⅰ. 추진배경 및 의의

1 현재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

○ 美-中 패권 경쟁, 코로나19, 러-우 전쟁 등으로 부각된 **글로벌 공급망 불안**이 **국가 차원**의 **'경제안보' 이슈**로 **부각**

- **주요국** 등은 **경제안보 확보 수단**으로서 **산업정책**과 **보호무역 기조**를 강화하며 **자국중심**의 **공급망 재편 정책 발표**

【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정책(☞참고) **】**

❶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전략산업, 핵심광물·원자재 등의 **역내 공급기반 확충**
❷ 핵심·전략 **기술**의 **경쟁우위** 유지 및 **보호체계** 강화
❸ 동맹국 연대·무역장벽 강화, 자원 무기화 등 **공급망 블록화**

국가	❶ 역내공급 기반 확충	❷ 기술우위 확보·보호	❸ 공급망 블록화
	CHIPS Act, IRA	수출통제개혁법	IPEF・MSP 주도
	반도체 전략	경제안전보장추진법	G7・QUAD 참여
	핵심원자재법, 반도체법	EU 경제안보전략	공급망실사법
	쌍순환전략	전략물자 수출통제	일대일로·홍색공급망

○ **원자재 확보, 자국 산업기반 강화, 기술우위 확보·유지** 등 **광범위한 공급망 재편**이 **글로벌 트렌드**로 **정착**되는 **모습**

- **국제 분업**을 통한 효율화, **자유무역 질서**의 상호호혜성에 대한 공감대 등 **기존**의 **관행·규범**은 **퇴조 → 분절화·블록화 진행**

- **인권·환경보호** 등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**산업정책 수립**은 **경쟁국 견제 장치**로도 **활용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**

글로벌 공급망 변화

전환기	절정기	위협기	쇠퇴기
WTO 설립 ('95년) 오프쇼어링 본격화	⇨ 中 WTO 가입 ('01년)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 확대	⇨ 글로벌 금융위기 ('08년) 글로벌 무역량 급감	⇨ 미·중 무역분쟁 ('17년) 코로나19 팬더믹 ('20년)

* 출처: PwC

⇨ **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·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**

2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증대

○ **에너지·비철금속** 등은 **거의 전량을 수입***, 주요국 대비 **중간재** 및 **특정국 수입 의존도**가 **높은 구조적 취약성 보유**

* 수입의존도(%, '20년): (원유) 100, (석탄) 99.1, (천연가스) 99.7, (철광) 99.4, (비철금속) 99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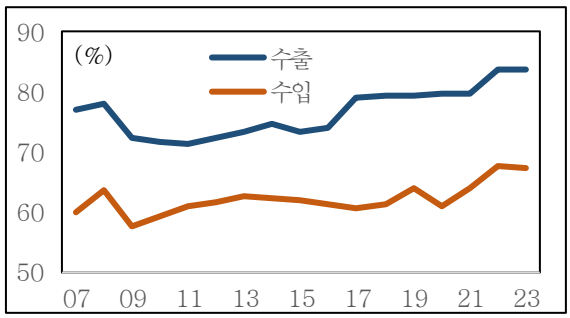
- 반도체, 배터리, 자동차 등 **주요 전략산업 소재·부품**의 **특정국 의존도**가 높아 **산업 밸류체인 전반**의 **리스크 증대 우려**

주요 산업 소재·부품 수입의존도('23년)

구분		특정국 수입의존도(%)
반도체	무수불산	96.6%
배터리	천연흑연	97.9%
	인조흑연	95.3%
전기차	희토 영구자석	84.7%

* 출처: 무역협회

대중국 수출입 중 중간재 비중



* 출처: 무역협회

○ **日 수출규제, 요소수 부족 사태,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, 중국 수출제한 조치**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**경제·민생 위험이 현실화**

3 美 新정부의 산업·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

【 美 新정부 공급망 관련 정책 변화 전망 】

▸ **미국 우선주의**와 **보호무역을 강화**하는 **무역 정책 변화** 전망

* 노동자·생산자 보호와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,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한 보편관세 도입(10~20%), 반도체지원법(CHIPS Act)·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축소·폐지 등 가능성

* USMCA(美·맥시코·캐나다) 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 등

▸ **미국 산업 보호와 육성**을 위해, **對中 견제 강화 지속** 전망

*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가 가능성 등

⇨ **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**

「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」 수립을 통해 우리경제의 **공급망 회복력을 강화**하고,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**성장기회로 활용**

참 고 **주요국 공급망 정책 주요 내용**

❶ 첨단·주력산업, 핵심광물·원자재 등의 **역내 공급기반 확충**
❷ 핵심·전략 **기술**의 **경쟁우위** 유지 및 **보호체계** 강화
❸ 동맹국 연대·무역장벽 강화, 자원 무기화 등 **공급망 블록화**

국가	❶ 역내공급 기반 확충	❷ 기술우위 확보·보호	❸ 공급망 블록화
미국	■ 인플레이션감축법 · 역내 생산 친환경차, 배터리,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에 세액공제 ■ 반도체과학법 · 민간부문 반도체 제조설비 확충 및 기술개발·투자 지원	■ 수출통제개혁법 · 반도체·AI 기술·제품을 수출허가 대상 포함, 제3국 우회수출 차단 ■ 수입규제 확대 · 中産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·상계관세 부과 및 수입물량 제한	■ IPEF·MSP 등 · 유사입장국 중심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■ EU(TTC)·日(JUCIP) 등 · 반도체·의약품 등 기술·인력협력 확대
일본	■ 기간 서비스 관리 · 항공·화물·통신·금융 등 중요설비 도입·유지·관리 사전심사 ■ 반도체 전략 · 반도체 제조설비 등 투자에 보조금 지원	■ 특허출원 비공개 · 국가·국민 안전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특허비공개 ■ 경제안전보장추진법 · 반도체·배터리·로봇 등 R&D 지원, 기술보호	■ G7 경제안보 협력 · 공급망협력 강화 및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적 조정 등 논의 ■ IPEF·QUAD 등 · 핵심 동맹국 중심 공급망 협력 참여 (희토류 등)
EU	■ 핵심원자재법 · 핵심광물 등 의존도의 중장기 완화목표 설정 → 금융·인허가 지원 등 ■ 반도체법 · EU 반도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·R&D 등 지원	■ EU 경제안보전략 · 외투 사전심사 제도 개선,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등 기술유출 방지 ■ 후속 이니셔티브 · 회원국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, 연구안보 권고안 마련	■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 ·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프리카·남미 등과 에너지 등 협력 ■ 공급망 실사지침 등 · 노동·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성 규범에 기초한 공급망 재편
중국	■ 쌍순환전략 · 첨단장비, 중간재 자급력 확대를 위한 국내 공급망 구축 ■ 외국인 투자유치 ·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최대 1억위안 지원	■ 전략물자 수출통제 · 희토류 등 전략물자·기술 수출통제 강화 ■ 5개년('21~'25) 계획 · 기초연구 지원강화, 미래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	■ 일대일로 전략 · 철도, 고속도로, 항만 등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로 공급망 확대 ■ 홍색공급망 확대 · 美·EU 등 규제 우회를 위해 아세안·멕시코 등에 제조공장 설립

Ⅱ. 「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」 추진 체계

기본 방향

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

목표

2030년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% 이하* 달성

* ('23년) 70% → ('27년) 60% → ('30년) 50% 이하

4대 정책 방향

1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

❶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취약성 점검

❷ EWS 고도화

❸ 위기대응체계 확립

2 공급망 회복력 강화

❶ 공공비축 고도화

❷ 국내생산기반 확충

❸ 수입선다변화 등 해외 공급망 구축

10대 정책 과제

3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

❶ 물류·사이버보안 등 공급망 인프라 강화

❷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

4 글로벌 공급망 內 위상 확립

❶ 공급망 안정화 대외전략 추진

❷ 양·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

2027년 까지 "55조원 + α" 재정·금융지원 추진

추진 기반

1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

2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부장특별회계

《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(요약) 》

2027년까지 "55조원 + α" 재정·금융지원 추진

경제안보 품목 수급 안정

품목 지정·취약성 점검
- 세부지표 체계화
- 목록 수시 갱신
- 등급별 취약성 점검
- 고위험품목 위기대응 계획 마련

+

EWS 고도화
- 부처·기관별 EWS 연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- EWS 운영지침 마련
- 국·내외 정보네트워크 연계·활용 및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

+

위기대응체계 확립
- 합동 모의훈련 실시
- 긴급수급조정조치·매점매석 위반 처벌근거 마련
- K-공급망 지원플랫폼 구축
- 위기시 긴급수급조정조치, 긴급조달, 할당관세 신속 적용 추진

공급망 회복력 강화

공공비축 고도화
- 공공비축 선정·해제 기준 마련
- 공공비축 목표 설정
- 타소비축·민간비축 확대를 위한 재정·금융 지원 방안 검토
- 비축기지 현대화·권역화 및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준공

+

국내생산기반 확충
- 공급망 안정화 기술 관련 세제지원 확대
- U턴/외투/지투 보조금 및 금융지원 확대
-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
- 공급망 완결형 협력 모델 10개이상 발굴
-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개선 방안 마련

+

해외공급망 구축
- 특정국 高의존 품목에 대해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 지원
-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축
- 공급망기금이 핵심광물 관련 직접·간접 투자 등 민관 공동투자 추진

경제안보 기반 고도화

공급망 인프라 강화
- (해운) 해운공급망 분석, 신규 항로 개설 지원
- (항공) 물류인프라 현대화,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
- (사이버보안) 거버넌스 구축 및 SBOM 도입

+

핵심기술 강화·보호
- 공급망, 경제안보 핵심기술 R&D에 3년간 25조원+α 지원
- 핵심기술 관리 및 유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

글로벌 공급망 內 위상 확립

공급망 안정화 대외전략 수립
- 자원부국의 對한국 高의존 품목 식별을 통한 쌍방향 협력 체계 구축
- 경제동반자협정(EPA) 조기타결 등 통상정책과 공급망 정책간 연계
- ODA 전략적 활용 및 K-Finance Package 적극 추진

+

양·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
- SCPA 체결을 통한 공급망 양자협력 강화
- IPEF 이행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및 위기시 대응 공조
- MSP 의장국으로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확대
-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지원

거버넌스
(공급망委, 공급망 3법, 민관협력체)
+
금융·재정지원
(공급망안정화기금, 소부장특별회계)

Ⅲ. 공급망안정화 정책방향 및 세부 과제

1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

(1)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취약성 점검

◈ **(배경)** 공급망 위험예방 및 효과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**경제안보품목 지정·해제 기준·절차**를 **정교화**하고 **수급상황** 및 **국내생산·수입대체** 가능성 등 **주기적 점검** 필요

현 재		3년 후
▸ 공급망리스크, 경제·산업 중요성 등 고려, 300여개 품목 지정·관리 중 ▸ 소관부처 중심 비정기적 점검	⇨	▸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등급 기준 체계화 ▸ 지정·해제 절차 구체화 ▸ 매 1년 주기 점검 및 갱신 ▸ 범부처 합동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(등급별 점검주기 차등)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. 경제안보품목 지정·관리 체계화				
1 기준 체계화				
○ 공급망 리스크, 경제·산업 중요성 판단을 위한 세부지표 체계화				기재부 (관계부처)
2 절차 등 구체화				
○ 경제안보품목의 체계적 관리 (경제안보품목 코드 신설 등 별도 관리체계 마련)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경제안보품목 HSK 코드 신설				기재부 (관계부처)
3 선도사업자 선정				
○ 연 2회 선도사업자 선정, 필요시 수시 선정				소관부처
2. 경제안보품목 취약성 점검				
1 취약성 점검				
○ 매분기(1등급), 매반기(2등급), 매년(3등급) 정기 점검 실시				소관부처
2 점검 후 환류				
○ 고위험 품목에 대한 '위기대응 행동계획' 마련				소관부처

1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관리

1 **(기준 체계화)** 경제안보품목 **지정 및 등급구분 기준**인 **공급망 리스크, 경제·산업 중요성** 판단을 위한 **세부지표 체계화**

분류	3단계 등급별 분류기준 체계화·명확화	
1등급 (高 위험)	①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 上 ② 국내생산, 대체수입 곤란도 上 ③ 경제·산업·민생 중요도 上	□ 기준별 상·중·하 평가 방식 ㅇ (1등급) ①②③ 모두 上 ㅇ (2등급) ①上, ②③중 上1, 中1 ㅇ (3등급) ①上, ②③ 모두 中 ※ ①②③ 각각의 명확한 상중하 기준 설정
2등급 (高·中 위험)	①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 上 ② 국내생산, 대체수입 곤란도 上~中 ③ 경제·산업·민생 중요도 上~中	
3등급 (中 위험)	①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 上 ② 국내생산, 대체수입 곤란도 中 ③ 경제·산업·민생 중요도 中	

※ 다만, 일부 기준에 미부합하더라도 외국정부의 수출통제 및 지경학적 위기 등으로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,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

2 **(절차 등 구체화)** 경제안보품목은 **공급망안정화위원회**의 **사전 심의**를 거쳐 **소관부처**가 **1년 단위**로 **지정·변경·해제**

ㅇ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**필요한 경우**에는 **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심의**를 거쳐 **수시 갱신**

ㅇ 주요 **경제안보품목**의 구체적 파악·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**HSK**(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) **코드 신설** 추진

ㅇ **경제안보품목**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**별도 관리체계 신설** 검토

* (예) 등급(1~3등급)–부처–산업·분야–품목 順으로 코드 부여·관리

3 **(선도사업자 선정)** **경제안보품목별·부처별 선도사업자**를 **연 2회 선정***하고, 필요시 **수시 선정**

* ('24년) 품목 65개, 서비스 2개 항목에 97개 기업(품목 92 + 서비스 5) 선정
→ '25년부터 연 2회 정기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선정 추진

2 경제안보품목 취약성 점검

1 **(취약성 점검) 경제안보품목** 갱신에 맞추어 **1등급은 분기, 2등급은 반기, 3등급은 1년 단위** 정기 점검 실시

○ 품목별 **위기발생 가능성** 및 **대응여력**을 중심으로 점검

- **(위기발생 가능성)** 시장 수급불안, 정치·외교적 문제 등에 따른 **공급망 리스크**를 **재외공관·정보기관** 등과 **협조**하여 검토
- **(대응여력) 수입대체처 존재 여부, 국내생산 가능성, 비축 여부·가능성** 등을 기준으로 점검

○ 대내외 환경변화 및 EWS상 이상징후 포착으로 **긴급점검**이 **필요한 품목**은 수시 점검

2 **(점검 후 환류)** 점검결과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고위험 품목은 위기 발생을 가정한 **'위기대응 행동계획'** 마련

○ **민·관 대응 역량**을 **총망라**한 **구체적 대응 시나리오** 검토*

* (예) 정부: 비축 확대, 국내생산 및 수입다변화 지원
민간: 재고 확대, 대체수입처 물색 등

○ 취약성 점검시 발굴한 과제는 **연도별 시행계획**에 추가

< 위기대응 행동계획(안) >

시간	위기 징후 탐지	수출통제 단행 (D day)	D+0~7일 (즉시 대응)	D+8~30일 (단기 대응)	D+2~n개월 (중기 대응)
계획 (예)	▸위기요인 및 발생유형 파악	▸통제대상 품목, 조치경위 파악 ▸민간 수급상황 등 경제산업 영향 파악	▸민간재고 활용 ▸수출국과의 국제협력	▸대체수입국 긴급수송 ▸차액·손실 지원 검토	▸해외자원협력 ▸기술개발 ▸국내생산 등

(2)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(EWS) 고도화

◈ **(배경) 수시로 변화하는 대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필요**

현재		3년 후
▸ 부처·기관 간 분절적 EWS 운영으로 상호 정보연계 부족 ▸ 수출입 통계에 의존한 정량분석 위주로 사전예측 기능 한계	⇨	▸ 부처·기관 간 정보를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정성정보 확충 ▸ 민·관 현장정보 소통채널 구축 등 모니터링 확대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 부처간 연계 강화				
ㅇ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ㅇ 공급망 EWS 운영지침 마련				
ㅇ 공급망 위기 선행 변수 발굴·모니터링				
ㅇ 휴민트·테킨트 등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활용				국정원
ㅇ 유사입장국과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				외교부
2 민·관 협력 강화				
ㅇ 선도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채널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
1 **(부처간 연계 강화)** 부처·기관별로 구축되어있는 **공급망 EWS 연계**를 통해 공급망 관련 **정보 공유 강화**

ㅇ 부처·기관별 정량·정성 정보를 **수집·공유**하기 위한 **"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"** 구축

* (내부망) 품목정보, EWS 점검결과 등 각 부처 정보를 한곳에서 실시간 확인
(외부망) 주요국 정책 동향, 기업 현지 정보 등 정성 정보 확충
↳ 시스템 구축(~'25.4Q) → 시스템 안정화('26) → 부처별 EWS 연계('27~)

○ 각 부처·기관별*로 운영 중인 **EWS 운영 방법 및 절차** 등을 **통일적으로 규율****하는 **'공급망 EWS 운영지침' 마련**

* 산업부 등 부처별 EWS, 외교부 재외공관EWS, 관세청(과세정보, 경보체계) 등
** 점검대상·주기·점검내용, EWS 정보의 보안 관리 등

○ **국내외 수급에 영향**을 미치는 **동반 변동지표*** **발굴** 등 산업별·품목별 **공급망 위기에 선행**하는 다양한 **변수 발굴·모니터링**

* (예) ①핵심광물 : 주요 생산국 채굴량·생산량, 주요국 핵심광물 지정현황 등
②식량안보 : 국제선물가격, 글로벌 생산량, 재고량 등

○ 국정원 **휴민트·테킨트** 등 **정보네트워크*** 적극 활용, **유사입장국**과 **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**** 등을 통한 **공급망 위험 모니터링**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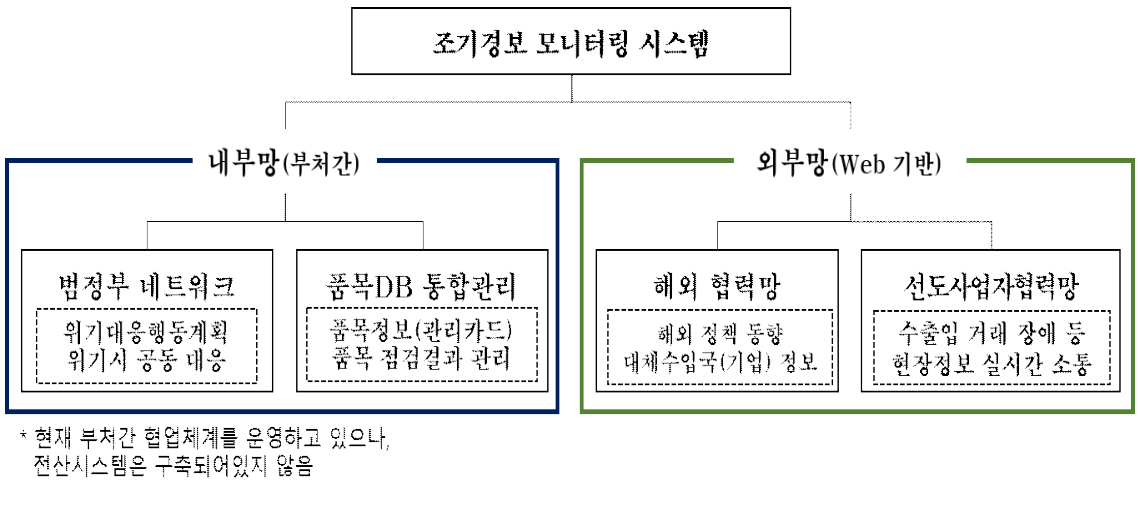
* 유관기관과의 경제안보 위험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안보 취약점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정보 등을 수집·전파
**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('23.8) 후속조치 및 핵심과제로서 '한미일 재외공관 EWS 연계협력 시범사업' 추진('24.7~)

2 **(민·관 협력 강화)** 민간의 **공급망 관련 정보**의 **신속한 확보**를 위해 **선도사업자**와의 **정기적 소통채널** 구축

* 공급망안정화법 §15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해당 물자, 원재료 등에 대한 구입량, 가격, 생산량, 재고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○ **축적한 공급망 정보**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**민간과 최대한 공유**

[공급망 통합 EWS 개요]



(3) 위기대응체계 확립

◈ **(배경) 실제 위기 발생에 대비한 「상시예방 활동 및 신속대응 체계」 강화 필요**

현재	3년 후
▸ [평시]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▸ [위기시] 공급망법 대응근거 마련	▸ [평시] 모의훈련 정례화 ▸ [위기시] 위기 대응체계 강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 (평시) 예방 강화				
ㅇ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실시				기재부 (관계부처)
ㅇ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				
ㅇ K-공급망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				
2 (위기시) 긴급대응				
ㅇ 위기품목 지정, 위기대책본부 등 대응체계 신속 가동				기재부 (관계부처)
ㅇ 위기시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 신속적용 추진				기재부

1 **(평시: 예방강화) 위기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, 법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및 공급망 충격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**

○ 기재부·국정원·외교부 등 **관계부처 합동으로 모의훈련 실시***

* 훈련품목 선정 및 위기관리 매뉴얼·위기대응 행동계획 기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체계 및 역량 평가

○ **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,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* 마련**

* 물가안정법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과 달리 공급망안정화법에는 처벌근거 부재

○ 공급망 충격 발생시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과 기업지원을 위해 **공급망 EWS 구축과 연계한 K-공급망 지원 플랫폼** 구축 추진

[K-공급망 지원 플랫폼 중장기 구축(안)]

❶ **(분석 시스템)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충격 영향 분석 시스템 개발 추진**

- 산업부, 관세청, 통계청 등 정부통계 및 민간 정보를 연계·활용

❷ **(정부→민간)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적극 지원**

- **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통계 작성 및 공유**
- 부처·기관 EWS로 파악된 **공급망 위험 요소 공유**
-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공급망 파악·분석 **가이드라인 작성·제공** 및 **스트레스 테스트 지원**

❸ **(민간→정부) 기업의 공급망 파악·분석을 통해 취약 지점 발굴 및 정보 공유 강화**

2 **(위기시: 긴급대응) 공급망 위기발생 및 발생 우려**가 높은 경우, 위기품목 지정,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**대응체계 가동**

○ **위기품목 지정** 시, 해당 품목의 **긴급수급 필요성**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 **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***도 **신속 추진**

*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 ① 위기품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 가능

○ **위기대책본부***를 **설치·가동**하여 **긴급수급조정조치, 긴급조달** 등 **위기 대응** 조치 시행

* 특정분야·품목 위기시 소관부처, 범정부 위기로 확대시 기획재정부에 설치

- **긴급조달***, **비축물자 적극 방출** 등 **단기 공급 안정화** 조치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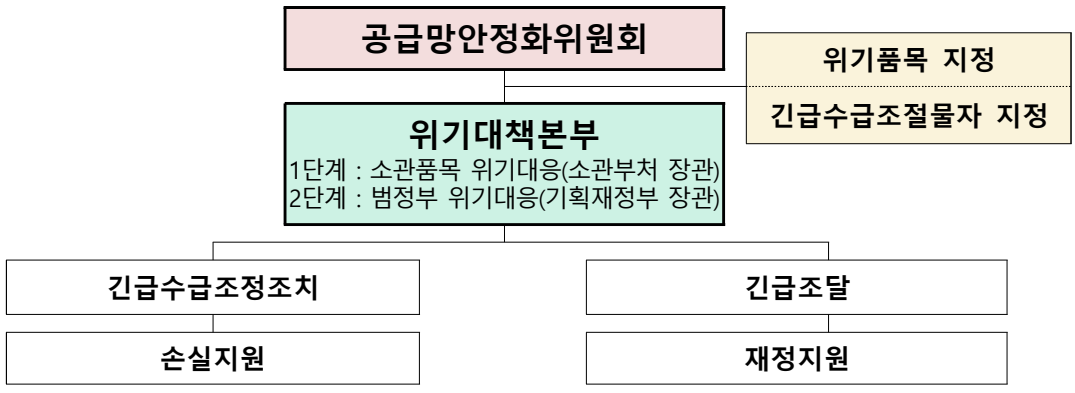
* 위기발생시 긴급구매 대응을 위한 긴급조달자금 신규지원('25년, 100억원)

○ 수입물량 긴급 확보에 따른 **구매가격 차액보전,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손실지원**을 위한 **금융·재정 지원**

○ 공급망 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, 관세법에 따라 **할당관세 신속 적용 추진**

○ **국정원의 인텔리전스 역량**을 활용하여 수입대체 국가·기업 물색 등 **초도대응 신속 추진**

[위기시 대응 체계도]



※ **지원책**(예시)

○ ❶수입가격-판매가격 간 차액 보전, ❷비축물자 방출, ❸할당관세 등 관세지원, ❹구매원가 이하 방출 시 면책 추진 등

2 공급망 회복력 강화

(1) 공공비축 고도화

◈ **(배경)** 비축은 공급망 **위기시 즉시 대응**을 위한 핵심 수단,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비축관리를 통해 **효율적 비축체계** 구축 필요

현재

- ▸ 소관부처·기관중심 공공비축
- ▸ 비철금속·희소금속 비축 불충분
- ▸ 공공비축 기지 노후화·협소화
- ▸ 민관협력 비축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 부족

⇨

3년 후

- ▸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 구축
- ▸ 비철금속(6종) 60일분('27)
 경제안보품목 희소금속 평균 75일분*('27)
- ▸ 공공비축 시설 확충 및 현대화
- ▸ 자발적인 민간참여를 통해 비축 품목 다변화 및 민간의 비축 능력 향상

* 영구자석용 희토류 900일분까지 확대 추진('25)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				
○ 비축품목 선정·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 수립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비축품목 해제 필요성 정기적 검토				
○ 품목별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방식 모색				
○ 품목별 비축정보 EWS 반영				
2 공공비축 목표설정				
○ 주요 경제안보품목 비축물량 확대 및 신규 비축품목 발굴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비축 목표 수정·보완				
3 민간역량 활용 확대				
○ 타소비축 확대를 위한 보관료, 재고관리설비·시스템 구축비용 등 지원 검토				기재부
○ 민간 비축시설 신축 및 개·보수, 비축물량 확대 등에 필요한 금융·재정지원 추진				기재부
4 비축 인프라 확충				
○ 조달청 비축기지 현대화·권역화 추진				조달청
○ 광해공단의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 준공				산업부 (광해공단)
○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광해공단 이관				산업부·조달청

1 **(공공비축 통합관리)** 비축품목 **선정·해제기준** 마련, **비축방식 다양화** 등을 포괄하는 **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** 구축

○ 경제안보품목 **공공비축**을 위한 **품목 선정** 및 **해제** 등 **분야별 비축기준** 수립

- **(선정) 분야별 특수성**을 감안하여 **비축 품목 선정기준 마련**

< 분야별 비축기준(예시) >

산업	**공급** 및 **가격 불안정성**, **산업적 중요성**, **국내 생산 능력** 및 국내 수요량, **비축 가능성** 등을 고려하여 비축 여부 결정
민생	**생활 밀접성**(중요성), 수입 의존도, **공급장애 가능성, 수요 변동성**, **비축 가능성** 등을 기준으로 판단
국방	**무기체계 활용성,** 수급 불안정성, **대체조달 가능성** 등을 고려

- **(해제) 비축 품목**의 **해제 필요성 정기적 검토***

* 비축 품목 선정 기준, 품질 검사 등에 따라 **비축 적정성**을 **평가**하고, 이에 미달할 경우 **비축 해제 여부 결정**

○ 분야별 비축기준을 토대로 비축주체별로 **품목별 비축계획 수립, 비축방식을 모색**하고 **비축전문委**를 통해 **범정부시각**에서 **종합 검토**

- 부처별 **차년도 비축계획** 및 **예산요구안**을 **마련**(1~2월)하여 **비축전문위원회 사전논의**(3~4월) 후 **기재부**(예산실) **제출**

- **타소비축*** 등 **비축방식**을 **다양화**하고, 비축물품의 **가격 급등**에 **대비**한 **제도개선****도 추진

*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, 수요기업이 보관 및 재고 순환

** 단건 구매방식 外 연간공급계약 도입 등

○ 경제안보품목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**비축 현황·목표** 등 **품목별 비축정보***를 **EWS**에 **반영**하고 **정보보안 강화**

* 조달청(비철, 민생 등), 산업부(광해공단, 석유公, 가스公), 농림부(aT), 해수부(수협)

2 **(공공비축 목표설정) 핵심 산업물자** 및 **민생품목** 중심 공공비축 확대

○ **주요 경제안보품목별 비축 물량 확대** 및 **신규 비축 품목 발굴**

○ 신설된 비축기준에 맞춰 분야별·품목별 **비축 물량**의 **적정성** 및 **확대 필요성** 등을 점검하여, 매년 **비축목표 수정·보완**

3 **(민간역량 활용)** 효율적 비축물자 관리를 위한 **민간역량 활용 확대**

○ **타소비축** 및 **민간 자발적 비축 확대**를 위한 **유인제도 마련**

- **(타소비축) 보관료, 재고관리설비·시스템 구축 비용** 등 지원 검토

* (現) 타소비축기업에 무상대여 및 입출고료 지원(평시), 비축물량 일부 우선구매권(위기시)
: 창고 무상제공, 품질·재고 관리 부담 등 민간부담이 커서 참여 유인 낮음

- **(민간비축) 비축시설 신축** 및 **개·보수, 비축물량 확대** 등에 필요한 **금융·재정지원 추진**

* 경제안보품목 민간비축 확대를 위한 창고신축 개·보수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 등

4 **(비축 인프라 확충)** 비축 효율성 제고 및 비축기지 현대화 추진

○ 조달청 **비축기지 현대화*·권역화 추진**

* 시설개보수, 재건축,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비축 최적화

○ **광해공단**의 핵심광물 등 **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 준공***

* 새만금산단 內 연면적 114,088㎡ 규모로 '27년 준공 예정

○ 광해공단 비축기지 신축 일정을 고려, **조달청이 보유**한 **희소금속**을 **'28년까지 광해공단에 이관 완료**

* 연도별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('25~'29)에 반영

(2) 국내생산기반 확충

◈ **(배경)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**

현재		3년 후
▸ 해외 高의존 취약 품목 多 ▸ Value Chain 상 지원정책 분절	⇨	▸ 민생·주력산업 분야 핵심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확대 ▸ 완결형 공급망 구축을 위한 부처간 + 단지간 협력, 전주기 지원 강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. 국내생산 시설 확충				
1 투자단계 세제·보조금·융자 지원 확대				
○ U턴·외투기업이 국내투자시 기금을 통해 금융지원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, 지원비율 가산				산업부
○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				
○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				기재부
2 생산단계 보조금 지급 및 생산비용 절감 지원				
○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				기재부 (관계부처)
2. 공급망 생태계 조성				
1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 발굴·지정				
○ 소부장 특화단지간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 10개 이상 발굴				산업부
2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				
○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체계 구축				중기부
○ 中企 선도사업자에 대한 기금 지원시 금리우대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신·기보 보증료율 감면 대상에 선도사업자 포함				금융위·중기부
○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강화 및 공급망기금 대출 연계 지원				중기부
○ 공급망 관리 정책 대응 역량 강화 지원				산업부
○ 산업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확대				산업부·중기부
○ 공급망 ESG 통합플랫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				중기부
3. 재자원화 지원				
1 법·제도정비				
○ 재자원화 원료의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, 별도 특수 분류체계 마련 등 재자원화 친화적 법·제도 마련				산업부 (관계부처)
2 재자원화 산업 육성 지원				
○ 재자원화 지원사업 도입, 클러스터 조성				산업부
3 실증지원				
○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운영				환경부

1 국내생산 지원 확대

1 **(투자단계) 국내 생산시설** 등 투자에 대한 **금융·재정·세제 지원 확대**

❶ **경제안보품목** 관련 **U턴** 및 **외투기업**이 **국내투자**를 할 경우 **공급망안정화기금**을 통해 **금융지원***

* (예) 시설투자, 지분인수, 기술확보 등 관련 포괄적 금융지원 제공

❷ **경제안보품목·서비스** 관련 **국내공장 신·증설**시 **외국인투자·지방투자 보조금** 지원·확대

-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한 **현금지원 우대 대상**에 **경제안보품목·서비스**를 추가하여 **지원비율 가산**(최대 +10%p)

- 선도사업자 등의 **경제안보품목·서비스** 관련 투자에 대해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**(소부장 특화단지입주기업 수준, +2%p)

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, 관련 **시설투자**에 대한 **세제지원** 검토

2 **(생산단계)** 특정 **高위험 경제안보품목**의 **수급안정**을 위해 **국내생산·수입다변화·비축**을 지원하는 **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** 도입

○ 공급망 위기발생시 **경제·산업측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**되나 사실상 **대응수단이 부재**한 경우로 **대상 한정**

【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(예시) 】

❶ **(국내생산)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·구매 촉진 지원***

*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검토

❷ **(수입다변화) 요소* 등 특정국 高의존 품목의 제3국 수입시 단가차액 지원**

* 차량용 요소의 중국 外 제3국 장기계약시 수입 단가차액 지원('25년, 30억원)

❸ **(비축) 공급망 위기 발생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자금 도입***

*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1등급 경제안보품목의 긴급 비축확대 지원('25년, 100억원)

※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 및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은 면밀히 검토 후 '25년 1분기까지 확정·추진

2 공급망 생태계 조성

1 **(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*)**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는 **다수**의 **수요·공급기업**이 참여하는 **소재·부품·장비 협력모델 발굴·지정**

* 특정 경제안보품목의 생산기업 뿐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여 국내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

○ **소부장 특화단지별 밸류체인**을 분석하여 **단지 간 협력**을 통한 **국내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***을 **10개 이상 발굴**

* (예) 광주(자율주행차 부품) 및 대구(전기구동 부품) 간 협력 자율주행 셔틀 개발

2 **(공급망 중소기업 육성)** **공급망 품목·서비스** 등 **전분야**에 걸친 **유망 중소기업**을 **발굴·지원**할 수 있는 **체계 구축**

* 추진계획(안) 마련(~'25) →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'26~'28) 수립시 반영

○ **中企 선도사업자**에 대해서는 **공급망기금 대출 지원시 금리 우대** 및 **수수료 경감**

○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**중소기업**의 **생산시설 확충**에 대해 **신·기보 보증 우대 지원***

*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 지원 대상에 공급망 선도사업자 포함((現) 소부장기업 대상 → (改)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 포함)

○ **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**의 **우대*** **대상**에 **경제안보품목 생산 중소·중견기업**을 포함하고, **공급망기금 대출**을 **연계 지원**

* 지원한도 상향 적용: (現) 2억원 → (改) 5억원

○ 우리 중소기업들이 **EU 공급망실사지침** 등 주요국의 **강화된 공급망 관리 정책**에 **적극 대응**할 수 있도록 **역량 강화 지원**

- **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**을 구축하고 공급망 내 기업군의 **탄소 감축** 및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대

- **공급망 ESG 통합플랫폼**을 활용하여 **협력사 온라인 자가진단** 및 **ESG 고위험군 협력 중소기업 현장 심층진단** 지원

* 기존 중소기업 ESG 통합플랫폼을 확대·개편하여 공급망 내 리스크 관리지원

3 재자원화 지원

1 **(제도정비)** 재생자원(사용후 배터리·E-Waste 등)을 활용한 **자원 추출·재활용 등**을 규율하고, 거래시장 조성을 뒷받침하는 **법·제도 정비**

○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**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***, **별도 특수 분류체계 마련** 등 **재자원화 친화적인 법·제도** 마련

* 핵심광물 추출용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검토

※ 안정적인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"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개선 방안" 마련(관계부처 합동, '25.上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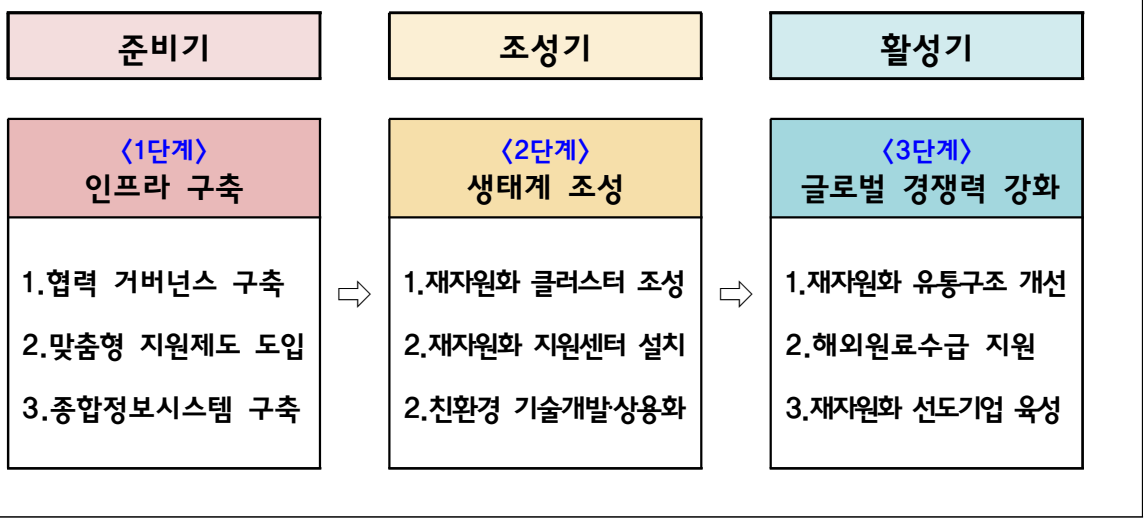
2 **(산업 육성) 재자원화 지원사업 도입*** 및 **소부장·첨단 특화단지**와 연계한 **재자원화 클러스터** 조성

* 시설투자 보조, 재자원화 원료DB 구축, 통계조사,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

3 **(실증지원)** 폐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 **규제 샌드박스*** 운영을 통해 **실증비용**(최대 1.2억원)·**책임보험료**(최대 2천만원) 및 사업 컨설팅 지원

*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→ 규제 면제·유예 → 시장 출시 및 시험검증

【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(23.11월) 】



(3) 수입선 다변화 등 해외 공급망 구축

◈ **(배경) 특정국 수입에 高의존시 해당국의 수급·정책변화 등에 따라 수입 차질 발생 가능**
→ **수입선 다변화, 해외 공급망 투자로 리스크 분산 및 자원확보 역량 강화 필요**

현재		3년 후
▸ 경제성 열위 등으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多 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제한	⇨	▸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재정·금융·컨설팅 지원 →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 완화 ▸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성 + 공급망기금의 민관 공동투자(직접투자 or 프로젝트 펀드) 추진 →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. 수입선 다변화				
1 제3국산 수입지원				
○ 특정국 高의존 품목 지원(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)				산업부·기재부
○ 수입선 다변화시 금융지원(공급망기금, 수입보험 등) 강화				산업부·기재부
○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주기 컨설팅 지원				산업부
2 P턴 지원 강화				
○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공급망기금 지원 확대				기재부
○ P턴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강화				산업부
○ 제3국으로의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				중기부
2. 해외 공급망 투자 확대				
1 외국법인 지분투자 지원 강화				
○ 외국법인 지분 취득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 추진				산업부·기재부
○ 해외 M&A 정보 확보 및 국내기업 매칭 지원				산업부
2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				
○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축				산업부·기재부·외교부
○ 공급망기금이 핵심광물 관련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등 민관 공동투자 추진				기재부
○ 공급망기금 및 민간의 직접투자에 대해 무보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일부 리스크 분담				산업부
○ 핵심광물에 대한 광해공단의 직접투자 방안 등 검토				산업부
○ 첨단산업분야 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검토				기재부
3 안정적 식량 공급망 확보				
○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등 지원				농림부
○ 해외곡물 유통시설 투자비 등에 대해 저리융자				농림부

1 수입선 다변화

1 **(제3국 수입지원)**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**제3국산 수입분**에 대한 **금융·재정 지원** 및 **대체 수입처 발굴**을 위한 **컨설팅 지원 강화**

○ **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,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**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**수입단가 차액*** 또는 **운송비 지원****

* (예) 차량용 요소: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% 보조('25년)

** (예) 원유: 非중동 지역에서 수입시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(~'27년)

○ **경제안보품목**의 **수입선**을 **다변화**한 **기업**에 대한 **공급망기금** 및 **수입보험***을 활용한 **금융지원 강화**

* (예) (現) 소부장·뿌리·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은 무보 수입보험 이용시 한도 우대
→ (改)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 중소중견기업도 무보 수입보험 한도 우대

○ 자체적으로 대체 수입처 발굴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이 어려운 **중소·중견기업** 대상 **수입처 다변화 전주기 컨설팅 지원***

* 대체 수입처 발굴 → 샘플 수입 → 샘플 성능검사·시운전 등 全주기 지원(KOTRA)

2 **(P턴 지원)** **해외 생산거점**을 **제3국으로 이전**하거나 **제3국 제조설비**를 **신·증설** 하려는 기업에 대한 **지원 강화**

○ **경제안보품목 해외 생산시설 투자**에 대한 **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확대** 및 **해외 정책금융기관***과 **협업**을 통한 **공동지원 추진**

* 美 DFC(국제개발금융공사), 日 JBIC(일본국제협력은행), 호주 EFA(수출금융공사) 등

○ **P턴 기업** 대상 **컨설팅**(현지 시장 조사, 인·허가 등) **지원* 강화**

* KOTRA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센터에 전담 데스크 운영·지원

○ **해외투자 절차 파악, 네트워크 구축**에 어려움이 있는 **중소기업의 제3국 진출 역량 보완**을 위해 **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***

* 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법인설립 지원(임차료 등), 판로 개척 지원(마케팅 등)

2 해외 공급망 투자 확대

□1 **(외국법인 지분투자)**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를 생산하는 **외국법인 지분투자**에 대한 **지원 강화**

○ **외국법인**의 **지분 취득, 사업 양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***에 **경제안보품목·서비스** 관련 **품목 추가*** 추진

* (現) 소부장 품목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지분 취득 및 사업 양수시 법인세 세액공제(인수금액의 5~10%) → (改) 적용품목에 경제안보·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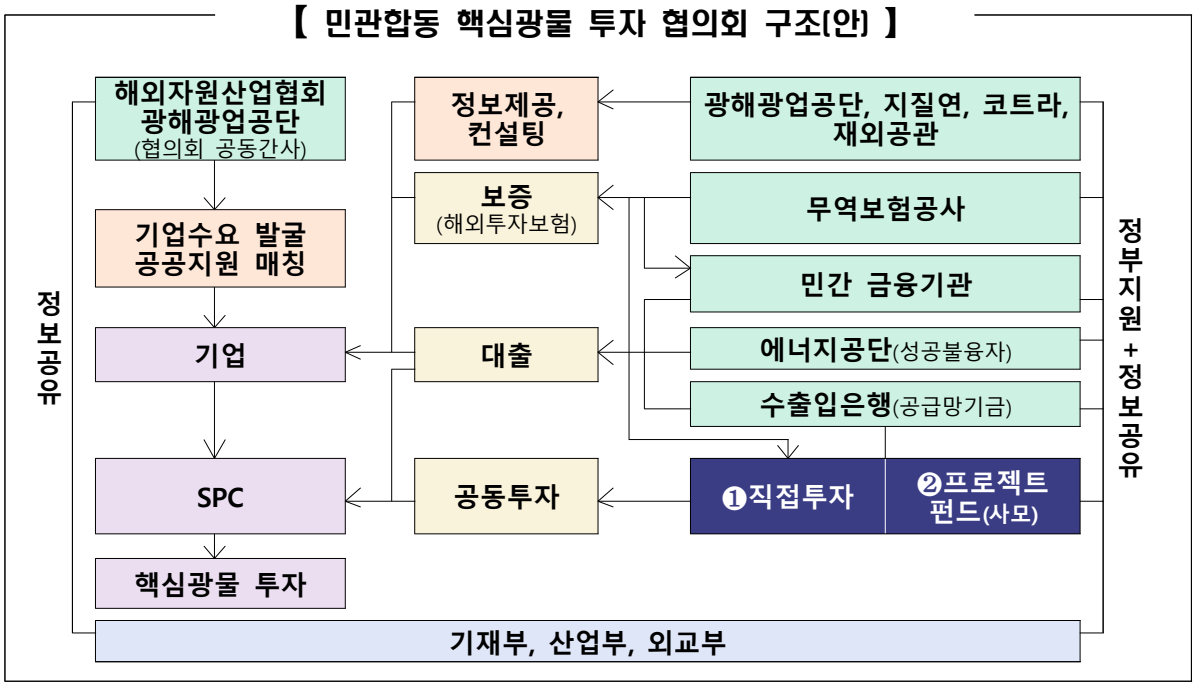
○ 국내 M&A 지원단체(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, KOTRA) 등을 통해 **해외 M&A 매물 정보 확보·분석** 및 **국내기업 매칭** 지원

□ **(광물)** 민관협력 기반의 **핵심광물 투자**가 **활성화**될 수 있도록 **공공부문**에서 **종합적 지원체계**를 **구축**하여 **마중물 역할** 수행

○ **민관합동**으로 **'핵심광물 투자 협의회'를 구축***하여 사업발굴 등 **정보제공·컨설팅** 및 **대출·투자·보증** 등 **필요자금 패키지 지원**

* 기재·산업·외교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, 수은 등 참여

【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조(안) 】



- **민간·공공**의 **핵심광물 투자**에 대한 **국내외 정보 공유***,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**공동탐사** 등 지원 강화

*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 등 신규 사업정보를 해외자원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유

- 민간 수요 발생시 **공동투자·대출·보증** 등 **패키지 지원*** 추진

* (공동투자)공급망기금 (대출)에너지공단+공급망기금 (보증)무역보험공사 등

【 사업단계별 중점 지원방향 및 예시 】

- (탐사단계) 광해공단 공동탐사, 정보제공 및 컨설팅, 성공불융자(대출) 등 중심 지원
- (개발단계) 공급망기금을 통한 공동투자, 무보의 보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리스크 부담 완화
- (생산단계) 정부차원 물류 원활화 협의 및 운송비 등 관련 자금소요(대출) 지원

○ **공급망기금**이 **500억원 수준**에서 **민관 공동투자***를 **추진**('25년)하고, 연도별로 수요를 보아가며 **지속·장기투자 추진**

* (직접투자) 민간수요 따라 기업과 함께하는 직접투자 추진
(간접투자) 프로젝트 펀드(사모)에 앵커투자자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 유도

- **공급망기금** 및 **민간의 직접투자**에 대해서는 **해외투자보험**(무보)을 통해 **무보가 일부 리스크**(비상위험)를 **분담***하여 적극적 투자 유도

* 투자대상국에서의 비상위험(수용·전쟁·송금 위험, 약정 불이행 위험 등)으로 손실 발생시 보상

- **공급망기금 핵심광물 투자시 감사원 사전컨설팅,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의결**을 통한 **면책 추진*** 등 **적극행정 유도**

*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공급망기금 투자에 대해 면책 추진

○ **민간수요** 및 **대외환경**의 변화 등을 **모니터링**하면서, 필요시 **핵심광물**에 대한 **광해광업공단**의 **직접투자 방안*** 등도 **검토**

*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물투자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

< 과거 정부 해외자원개발과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와의 차이점 >

구 분	과 거	향 후
사업주도	공기업 주도	민간주도 + 공공참여
주요 목적	자원확보를 통한 경제발전 및 대외경제협력	자원안보 위기 대비·대응 +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
법적 근거	해외자원개발법	자원안보특별법 + 공급망안정화법 + 해외자원개발법
지원범위	해외광산	해외+국내광산
손실보전	해외자원개발펀드 손실보전(무보)을 위한 재정지원	펀드(사모) 손실보전을 위한 별도 재정지원 없음

○ **반도체·이차전지** 등 주요 **첨단산업 분야**에 필요한 **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**에 대한 **세제 인센티브** 강화 검토

3 (식량)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

○ **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 다변화**를 위해 **추가 거점지역**을 **발굴***하고, **탐색·진출·정착 단계별 전주기 지원**** 강화

* (현행) 연해주, 동남아 위주 진출 → (확대) 미주, 독립국가연합(CIS), 오세아니아

** (탐색) 현지 환경조사 및 교육 지원 → (진출) 농지임차, 장비구입 등 시설·운영자금 융자 지원 → (정착) 재배기술, 경영개선 등 컨설팅

○ **해외 곡물 저장·가공·유통시설 투자비용** 및 **소요자금**(신설, 인수, 지분투자 등)에 대해 **저리융자 지원***

* 해외 곡물엘리베이터 등 곡물 저장·가공·유통시설 확보시 융자지원('25년 500억원, 금리 2.0%)

3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

(1) 물류·사이버 보안 등 공급망 인프라 강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‘25	‘26	‘27	소관부처
1. 해운물류 인프라 강화				
1 해운인프라 확충				
○ 주요 품목의 수입 항로별 해운공급망 분석				해수부
○ 해외 물류거점별 물류센터·터미널 등 인프라 확보				
2 장기운송 확대				
○ 장기운송계약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				해수부
3 물류 수급지원				
○ 컨 박스 수급을 위한 투자·보증 등 금융지원				해수부
4 국제기준 선도				
○ 저·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및 녹색항로 구축				해수부
2. 항공물류 인프라 강화				
1 항공물류 인프라 현대화				
○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				국토부
○ 물류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				국토부·중기부
2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				
○ 글로벌 운수권 지속 확보·배분 및 외국 화물항공사 국내 유치				국토부
○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국내 유치 및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기금 지원				기재부·국토부
3 연계물류				
○ 주요 거점에 국제물류특구 조성				국토부·해수부 등
3. 사이버 보안 강화				
1 SW공급망 보안				
○ 범정부 SW 공급망 보안 TF 구성, ‘SW 공급망 보안 제도’ 시행을 목표로 로드맵 마련				국정원·과기부 등
○ 정부 조달과정에서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 제도·지침 개정 및 신뢰성 있는 공급업체 지정 방안 마련				국정원
○ SW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 구축 지원 및 개발환경 전반에 보안점검·컨설팅 제공				과기부
○ 금융권 SW 도입·운영 관련 보안 체크리스트 마련				금융위
2 美·英 등 주요국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지속				국정원·외교부
3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 및 육양국 다변화 추진				과기부
4 필수금융 서비스 안정성 확보				
○ 업무위탁 확대에 따른 핵심기반시설의 리스크 점검 및 핵심기능 유지				금융위
○ 개별 금융회사의 자금인출, 송금 등 안정적 금융거래 제공 위한 위기대응역량 제고				금융위

1 해운물류 인프라 강화

◈ **(배경)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무역(물동량 기준 99.7%)이 이루어지는 해운 물류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**

현 재	3년 후
▸ 해운공급망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▸ 공급망 충격 발생 시 해외 인프라 확보 어려움	⇨ ▸ 핵심 품목의 국가별 의존도 및 해상 운송 루트 공급망 분석 ▸ 공급망 충격 발생시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

1 **(해운인프라) 주요 품목의 수입 항로별 해운 공급망 현황** 분석 및 **국적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** 지원 등 해외 **항만 인프라** 확충

○ 특정 항로 봉쇄시 **대체항로 정보**, 운항시 발생가능한 **위험정보** 등을 **사전에 분석**하여 **민간과 공유**

○ 글로벌 물류·공급망 **투자펀드**(해진공 등) **조성** 및 **민관합작 투자**(항만공사 등) **활성화**로 해외 주요거점별 **물류인프라 지속 확충***

*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'32년까지 16개소로 확대

○ 부산항 연계 **글로벌 거점항만에 터미널 지분·운영권 확보** 추진

* 미국 최대의 해상화물 Gateway인 뉴욕/뉴저지(동부) 항만과 LA/LB 항만(서부)에 국적 원양선사의 터미널 지분확보 지원

2 **(장기운송 확대)** LNG·원유 등 **주요 경제안보품목**에 대한 **장기운송계약**을 체결하는 선·화주*에게 **항만시설사용료 감면**

* 컨테이너 정기선에서 부정기선(벌크·가스선 등)까지 우수 선·화주 인증대상 확대

3 **(물류 수급지원)**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**컨테이너 박스 수급** 지원을 위한 **투자·보증** 등 **금융지원*** **지속** 제공

*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박스 수급시 금융리스 계약 등을 통해 선사의 비용부담 경감

4 **(국제기준 선도)** 메탄올·전기·암모니아 등 **저·무탄소 선박 기술개발***, 시험인프라 및 **녹색항로구축****을 통해 IMO 국제기준 선도

*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R&D(2,540억원, '22~'31)

** 녹색항로를 위한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및 국제협력 기반 R&D(299억원, '25~'28)

2 항공물류 인프라 강화

◈ **(배경) 최근 지정학적 불안 증가 등으로 해운물류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필수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항공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짐**

현재	3년 후
▸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항공물류의 중요성 증가* * 항공물류 비중('22년, 금액기준): 약 30% ▸ 항공화물 네트워크 부족	▸ 항공물류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'스마트 화물터미널' 구축 ▸ 신규 노선 취항, 외국 화물항공사 국내 유치 등을 통한 항공 네트워크 확충

1 **(국내 인프라)** 국내 **항공물류 인프라 현대화**를 지속 추진

○ **항공물류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**을 위한 **스마트 화물터미널*** 구축

* (총 사업비) 1,215억원 / (공사기간) '25 ~ '28 / (면적) 30,457㎡

○ 반도체 등 **공급망** 관련 **주요 품목**에 **특화**된 **물류기업 유치**를 추진하고, 中企의 항공물류 지원을 위한 **공동물류센터*** 구축

* 인천공항·중진공 협력, 인천공항 제2물류단지 內 약 18,500m^2 공동 개발

2 **(글로벌 네트워크)** 신규 노선 취항 및 외국 화물항공사·물류배송센터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**항공 네트워크 다변화** 추진

○ 항공회담 등을 통해 **글로벌 운수권**을 지속 **확보**하고, **신규 외국 화물항공사**의 **국내 유치**도 지속 추진

- **여러 국가**를 경유하는 **화물기 특성**을 살려 **5자유*** 운수권을 확대, **동남아-韓-유럽·미국** 등 **물류망** 구축 지원

* 자국에서 최종 출·도착하는 중간에 상대국-제3국 간 화물도 운송할 수 있는 권리

○ 글로벌 물류기업의 **물류센터(GDC*) 국내 유치**를 적극 추진하고, 국내 항공사의 **해외 화물터미널 투자**에 **공급망기금** 지원

* 글로벌 물류센터(**G**lobal **D**istribution **C**enter):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입·보관후 재포장·배송(인천공항: 로지스밸리('26), 현대글로비스('25), 쉥커코리아('23) 등 9개社 GDC 유치)

3 **(연계물류)** **항공·해운·육상 복합 운송체계 강화**를 위해 공항·항만·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 **국제물류특구*** **조성**

* 공항·항만 등 물류거점 인근 물류·산업용지 조성, 기업친화적 규제특례 허용 등을 통해 물류에 기반한 제조·R&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

3 사이버 보안 강화

◈ **(배경) 국내 경제·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·물류·금융결제 등 관련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여 데이터 유출·해킹·운영중단 등 방지 필요**

현재	3년 후
▸ SW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 미비 ▸ 금융 업무위탁 확대 등 리스크 증가에 따른 필수 금융서비스 중단 우려 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금융권 SW공급 중단 등 보안위협 증가	▸ SW 공급망 위험관리를 위한 보안기준 마련 및 제도 시행 ▸ 금융분야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▸ **금융권 SW 도입·운영관련 보안사항을 점검**하여 보안 위협에 대응

1 (SW공급망) SW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 구축, SBOM* 도입 및 금융권 SW 공급망 점검

* (Software Bill of Materials: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) 소프트웨어 별로 구성 요소의 라이선스, 버전, 패치 상태 등을 명시하여 보안 강화에 기여

○ 범정부 **SW 공급망 보안 TF 구성** 및 **'SW 공급망 보안 제도'*** 시행을 목표로 **로드맵 마련**

* 국가·공공기관 디지털 제품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공급망 보안 기준 및 대책 마련, 민간 기업 사이버 보안 강화, 전문인력 확보 등 포함

- 정부의 ICT 제품·부품 조달과정에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 **보안 제도·지침 개정** 및 신뢰할 수 있는 **공급업체 지정 방안** 마련

○ 기업이 **SBOM**을 **생성·활용**할 수 있도록 **SW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** 구축을 지원*하고, 개발환경 전반에 **보안점검·컨설팅** 제공**

* SBOM 기반 SW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('25년, 40억원)

** SW개발기업 SW 공급망 보안점검 지원 사업('25년, 20억원)

○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SW **공급 중단** 등 **보안 위협**에 대응

-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**금융권 SW 도입·운영**관련 **보안 체크리스트***를 마련

* SW 도입 시 보안정책·절차, SW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 고려사항 등을 제시

2 **(국제협력)** **韓美**(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), **韓英**(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) 등 주요국들과 **사이버안보 협력** 지속

3 **(해저 통신케이블)**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**민관 협의체*** **구성·운영** 및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**육양국 다변화**** 추진

* 관계부처·산업계 등으로 구성,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의 안전·보안 강화방안 등 협의

** 해저케이블을 육지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국사(육양국)를 부산·거제 중심에서 他지역으로 확대

4 **(필수 금융서비스)** 핵심기반시설 및 금융회사의 **업무 중요도별**로 **리스크**를 **점검**하고 **대응 방안** 마련

○ **(핵심기반시설*)**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잠재적인 **리스크**를 **점검**하여 **결제, 청산, 정보관리** 등 **핵심 기능 유지**

* 시스템 중단이 국가경제 및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체불가능한 시설 (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, 코스콤, 금융결제원, 금융감독원, 보험개발원, 신용정보원)

○ **(개별 금융회사)** 자금인출, 송금, 대출 등 **금융거래가 안정적**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**전자적 침해 차단** 등 **위기 대응 역량 제고**

* 금융회사의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마련 및 금융권 합동 비상대응(재해복구)훈련 실시

(2)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

◈ **(배경) 경제·안보 측면에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심화 + 최근 핵심기술 유출 시도 급증* →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유출 보호체계 강화 필요**

* 최근 5년간('20~'24.8) 해외 기술유출 시도 97건,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대 추산

현재		3년 후
▸ 중요 기술에 대한 R&D 지원중	⇨	▸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&D 및 상용화 지원 확대
▸ R&D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에 관한 지원 부족		▸ 특허 출원 지원을 강화하여 핵심 특허 확보 + 지식재산(IP) 기반 자금조달 촉진
▸ 핵심기술 유출 시도 증가 추세		▸ 사전예방+처벌 강화로 핵심기술 보호 강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.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				
1 공급망, 경제·안보 핵심기술 R&D 지원 강화				
ㅇ 공급망, 경제·안보 핵심기술 R&D에 대해 3년간('25~'27년) 25조원 이상 지원 추진				과기부·산업부 등
ㅇ 경제·안보, 공급망 밀접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				과기부·산업부
ㅇ R&D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확대 추진				기재부
ㅇ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핵심기술 점검·발굴				과기부·산업부
2 기술경쟁력 기반 조성				
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 및 사업화 지원				특허청
ㅇ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등 지원				특허청
3 첨단산업 분야 주요국과 기술협력 확대				
ㅇ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 R&D 확대				산업부
ㅇ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 등 참여				과기부
2. 기술유출 방지 등 기술보호체계 강화				
1 정책·제도 개선				
ㅇ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유출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				산업부·과기부·기재부·특허청
ㅇ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포착				특허청
ㅇ 스타트업·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				중기부
2 기술유출 법집행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				
ㅇ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구성				대검찰청
ㅇ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등 정보공유				법무부·산업부

1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

□ **(R&D 지원)** 공급망, **경제·안보** 차원에서 **전략적 가치**가 있는 **핵심기술 R&D**에 대해 **3년간**('25~27년) **25조원 이상 지원** 추진

○ 반도체·이차전지 등 **경제·안보, 공급망 안정화 밀접 기술**에 대한 **지원방안 추진**

【 주요 추진과제 】

분야	핵심 추진과제
❶소부장 핵심전략 기술	▪ **공급망 산업원천소재 기술개발** 예타 추진 - 소부장 경제안보품목(185개, 산업부) 핵심 소재의 **대체(Replace), 저감(Reduce), 재자원화(Resource)** 등 **3R 기술개발** **Replace:** 기존 기술의 Break-through를 위해 **혁신적 산업원천기술 및 양산기술**개발 **Reduce:** 특정국 高의존 핵심소재 사용을 **획기적으로 감축**하기 위한 **혁신공정기술**개발 **Resource:** 폐자원으로부터 **고품위 원소재 확보**를 위한 **高난이도 전처리기술**개발
❷국가 전략기술	▪ **경제·안보**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**3대 게임체인저 기술**(AI·반도체, 첨단바이오, 양자) R&D에 **집중 투자**
❸국가 첨단전략 기술	▪ 경제·안보, 공급망 중요도가 높은 **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** 등 **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**에 대한 대형 R&D 추진 * (반도체) 高집적·高기능·低전력화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('25~'31년) (이차전지) 차세대 이차전지(전고체, 리튬메탈, 리튬황) 기술개발('24~'28년) (디스플레이) 무기발광(iLED) 디스플레이 기술개발('25~'32년)

○ **R&D·투자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**인 **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전략기술** 범위에 **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확대** 추진*

* 경제안보품목 등급, 업계 건의,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추진

○ **경제안보품목·서비스** 관련 **핵심 기술을 지속 점검·발굴**하고, 관련법상 **기술로 지정**하여 **R&D 지원**

<법상 기술지정 요건 중 공급망·경제안보 관련 사항>

❶소부장 핵심전략기술	❷국가전략기술	❸국가첨단전략기술
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·안보적 중요성	국민경제 및 연관산업 영향, 외교안보측면 전략적 중요성	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·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
10대 분야 200개 기술	12대 분야 50개 기술	4대 분야 17개 기술

2 **(기술경쟁력 기반조성)**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**특허권** 등의 **지식재산**에 대한 **지원 강화**

○ 중소기업의 **지식재산**(IP) 기반 **자금조달 지원***을 통해 **사업화를 촉진**하고, **경제안보품목** 관련 **기업**에 대한 **우대 신설****

* IP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(투자 연계시 80%, 사업화 연계시 50%) + IP 담보대출 부실 발생시, 회수지원기구(정부·은행 공동출연)가 담보 IP를 매입 후 매각

**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해 IP 가치평가 지원율 10%p 추가 우대

○ **국내외 특허 빅데이터 분석**('25년 20개)을 통해 **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다변화** 및 **핵심기술 국산화 전략 수립 지원***

* 특허 보유기업 정보 등을 통해 대체 수입가능 기업 파악 및 기술개발 협력 지원

3 **(기술협력)** **첨단산업** 분야 **주요국 등**과 **기술 협력** 등 **파트너십 확대**

○ **첨단기술 확보**를 위해 **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 R&D 확대***

* 해외 우수 연구기관·대학 내 설립한 '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'를 통해 공동 R&D 수행
↳ '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'를 現 6개소에서 향후 12개소까지 확대 추진

○ 주요 **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*** 등 참여를 통해 **정책공조 다각화**

* 바이오제약 연합(韓, 美, 日, 印, EU 등 5개국), 퀀텀개발그룹(韓, 美, 日, 獨 등 9개국) 등

2 기술유출 방지 등 기술보호체계 강화

1 **(정책·제도)** 핵심기술에 대한 **선제적 관리** 및 **유출시 처벌 강화**

○ 반도체·이차전지 등 **국가핵심기술, R&D, 방산기술, 영업비밀** 등의 **엄격한 관리** 및 **유출시 처벌강화**를 위한 **법령 개정 추진**

<기술보호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추진사항>

구분	주요 내용	관련 법령	
국가핵심기술	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(등록의무 부과) 신설 처벌대상 확대(목적범→고의범), 기술유출 벌금 상향(15→65억원) 등	산업기술보호법(산업부)	법
	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사용 관련 보안지침 신설		지침
R&D	잠재적 중요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안등급 세분화 (보안-민감(신설)-일반), 범부처 보안지침 마련 등	국가연구개발혁신법(과기정통부)	
방산기술	관세법 지재권 보호대상(통관보류 가능)에 방산기술 추가	관세법(기재부)	
	국방상 필요 발명에 대해 외국 특허출원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	특허법(특허청)	
영업비밀	영업비밀유출 알선(브로커)에 대한 처벌·신고포상금 신설	부정경쟁방지법(특허청)	

○ **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**('24.4월)에 따라, **특허 빅데이터 분석**을 통해 **기술유출 정황 포착 → 방첩기관 공유** 및 **수사로 연계**

○ **스타트업·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바우처*** **지원 확대****

*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·운영, 기술보호 컨설팅·교육 등 지원

** 스타트업(창업 7년 이내)은 한도 1천만원, 보조율 10%p 추가 적용

2 **(법집행)**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시, '**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***(대검찰청)'을 **구성**하여 **신속 수사**

* 경찰·해경·국정원·특허·관세청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유출 수사공조 강화

3 **(국제공조)** 韓·美·日 **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*** 등을 통한 **기술유출 수사정보** 등에 대한 **정보공유 지속**

* 주요사건의 수사정보 및 의심기업 리스트 등 공유 및 협업(법무부·산업부 등 참여)

4 글로벌 공급망 內 위상 확립

(1) 공급망안정화 대외전략 추진

◈ **(배경) 해외 高의존 경제구조 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 정책과 연계된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**

현재	3년 후
▸ ODA 등 대외전략과 공급망 정책 간 연계 부족 ▸ 해외 高의존 경제구조로, 주요국 정책에 따른 수세적 대응	⇨ ▸ 공급망 정책과 연계한 대외전략 추진 ▸ 적극적 대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위상 강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 적극적 대외정책 수립				
○ 對한국 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의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상대국에 의한 공급망 불안에 적극적 대응				외교부
○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정기·수시적 개최				
○ 글로벌 사우스 투자수요에 맞춤형 지원 추진				산업부·기재부 등
2 공급망 협력과 통상정책간 연계				
○ 자원부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(EPA) 협상 지속				산업부
○ 인도·태평양 지역국과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글로벌 사우스 전반의 광물협력 파트너십 구축				산업부
3 경협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급망 강화				
○ ODA 전략 목표 수립시 대외정책과 연계 강화				국조실 (관계부처)
○ 중점협력국 선정시 공급망 협력가능성 고려				국조실 (관계부처)
○ ODA 자금으로 공급망 관련 전후방 사업 지원 검토				기재부·외교부 등
○ 공급망 강화 기여 프로젝트에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				기재부

1 **(적극적 대외정책) 자원부국**에 대한 **일방적 의존관계**를 **쌍방향 협력관계**로 고도화하여 **지속가능한 협력구조 마련**

○ **상대국 입장**에서 **對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**(기술, 소부장 등)을 **식별**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**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구축** 추진

○ **주요국**의 **법·제도 변화 분석** 및 **우방국**과 **협력**을 통해 여타국 입법·행정조치 등의 우리 경제 **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노력**

- **경제안보담당관 회의**를 **정기·수시 개최**하여 **주요국 법·제도 변화 동향 파악 및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** 등 추진

- KOTRA **공급망센터** 등을 통해 **우리 기업**의 **글로벌 사우스 지역 투자 수요**에 맞춘 맞춤형 **법률자문, 정보제공** 등 지원 추진

* 주요 현지투자 프로젝트는 인력·비자·인허가 등 밀착 지원

2 **(통상정책과의 연계) 핵심광물·자원**을 **보유**하고 **성장 잠재력**이 큰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**신흥시장**과의 **경제협력 강화**

○ 자원부국인 몽골, 세르비아 등과의 **경제동반자협정**(EPA) **조기 타결** 등을 위한 **협상 지속**

○ **공급망 블록화**에 대응하기 위해 **인도·태평양 지역 국가**들과 **양·다자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**

○ 핵심광물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**글로벌 사우스 전반**으로 **"광물협력 파트너십"** 구축

* (예) 베트남, 인니, 카자흐스탄, 탄자니아, 칠레 등 주요 광물 부국에 광물자원 역량강화 사업,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등 추진

3 **(경협사업 연계) 공급망 안정**을 고려한 **ODA 정책 추진,** 해외 개발사업 지원 **정책금융 간 연계 강화** 등을 통한 **공급망 강화**

○ **(ODA의 전략적 활용)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제고** 등 우리 **대외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**를 강화하여 ODA 전략에 반영

- **중점협력국 선정** 시 수원국의 발전 수준,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·경제안보 등 **경제·통상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**

-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공급망 관련 전·후방 사업 지원**(도로, 물류, 에너지 등)을 검토

○ **(K-Finance Package)** 자원개발 등 **공급망 강화** 기여 **프로젝트**에 **ODA** 및 **기타 정책금융 간 패키지 지원**

* (예) 사업발굴·자원개발 정책 수립(KSP, KOICA) + 인프라건설(EDCF, EDPF) + 광물자원 개발(공급망기금) + 정·제련, 가공공장 구축(수출금융 등 정책금융)

- 핵심자원 **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**부터 **수원국과 협의**를 통해 **초대형 패키지형 프로젝트** 수주 지원

【 자금별 활용 예시 】

- **(무상 ODA)** 핵심 자원 개발·관리 및 이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정책 등 국가별 정책수립·컨설팅 및 타당성조사 등 지원(KSP, KOICA 등)

 * (예) EU 공급망실사법 등 강화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자원개발, 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등

- **(유상 ODA)** 핵심광물 등의 이동에 필수적인 송전망·도로·철도·항만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(EDCF, EDPF)

 * 필요시 대여된 자금의 일부는 핵심광물 등 현물로 대체 상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

- **(공급망기금)** 광물 구매계약 체결·현지 광산기업 지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또는 직접 지분 투자

- **(수은금융)** 현지 정·제련시설, 가공공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지원

(2) 양·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◈ **(배경) 특정국 의존도 완화, 대체 공급선 확보, 공급망 위기시 공조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·다자간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확대 및 강화 필요**

현재		3년 후
▸ 주요국 위주 경제협력 협의체 구성 ▸ IPEF·MSP 등 공급망 관련 다자 협의체 참여	⇨	▸ 경제안보품목 수입국과의 공급망 관련 실질적 양자협력 강화 ▸ 다자협의체 내 논의 주도 및 핵심광물·자원의 실제 확보 기반 마련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. 양자 협력 파트너십 강화				
1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과의 공급망 협의체 추진				
○ 경제협의체 신설 및 장관급 격상				기재부·산업부·외교부
○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심 해외인사풀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2 공급망파트너쉽(SCPA) 체결				
○ 핵심협력국과 맞춤형 공급망 협력체계 확산				산업부
3 양자간 공급망 협력 고도화				
○ 인접국과 핵심광물 공동생산, 주요품목 공동구매 및 스왑방안 등 도입 추진				산업부
○ 위기대비 합동 모의훈련 등 비상시 협력 강화				기재부 (관계부처)
2. 다자 네트워크 활용				
1 IPEF 공급망 협정 이행				
○ 소위원회·분야별 액션플랜팀 적극 참여				산업부 (관계부처)
○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례적 추진				
○ 주요 회원국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				
2 MSP 통한 협력 확대				
○ 기존 사업 성과 창출 및 신규사업 확대 주도				외교부 (관계부처)
○ 우리기업 진출 가능 MSP 사업 발굴 확대				
3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활용				
○ 개도국 대상 공급망 강화 정책 수립·역량강화 지원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무상지원을 통해 발굴된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시 국제금융기구 협조 융자 추진				

1 양자 협력 파트너십 강화

1 **(공급망 협의체)**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 **경제관련 협의체*** 미설치 국가들과 **협의체**를 **신설****하고 기존 협의체 **장관급 격상** 검토

* (現) 1급이상이 수석대표인 외국정부와의 경제관련 협의체는 71개국 156개
** 품목 중요도, 양자관계 등을 고려하여 칠레 등과의 협의체 신설 필요성 검토

○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**행정부, 의회, 산업계, 여론주도층** 등 **주요 해외인사 풀 구축**

2 **(SCPA*)** 주요국과 **공급망파트너십을 체결**하여 미래 중점산업 중심 **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**하는 등 **공급망 협력체계 마련**

* **S**upply **C**hain **P**artnership **A**rrangement

○ **핵심협력국**과 **교역·산업협력 구조** 등을 고려한 **공급망 협력**을 **확산**하여 **실질적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**

구분	주요 내용
위기전	▪ 위기 감지시 핫라인을 통해 정보 공유 등 사전 통보
위기시	▪ 공급망 교란 상황 시 긴급회의(5일 내)를 개최, 품목 재고 등 지원 방안 논의, 필요시 공동으로 제3국 조달 모색 등 협의
분야별 협력	▪ 핵심광물·에너지 등 핵심 협력분야 부속서 마련, 협력분야 합동 모의 훈련 실시

3 **(협력 고도화) 공급망 관련** 양자간 **실질적 협력 방안** 도출

○ **일본·싱가포르** 등 인접국과의 **제3국 핵심광물 공동 생산,** 주요 품목 **공동구매** 및 **스왑방안 등 도입** 추진

* (예) 한국과 일본은 멕시코 LNG 기지 공동 건설

○ 공급망 위기 발생시를 대비한 **합동 모의훈련 실시** 등을 통해 **비상시 실질적 협력**이 가능한 체계 마련

2 다자 네트워크 활용

※ 공급망 관련 다자 협의체를 주도해 왔던 미국의 新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과 주요국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응

1 **(IPEF*) 공급망위원회, 위기대응네트워크**(CRN**) 등 이행기구를 통해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위기시 대응 공조 지속

* **I**ndo-**P**acific **E**conomic **F**ramework / ** **C**risis **R**esponse **N**etwork

○ 소위원회 및 분야별 액션플랜팀*을 활용하여 복원력 제고 추진

* 물류·데이터분석 소위, 반도체·핵심광물·화학·보건 액션플랜팀 설치

○ CRN 의장국으로서 **역내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**를 위한 **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례화**(연 2회)

○ 일본·호주 등 **주요 회원국**과 **정책교류** 및 **협력사업 발굴** 추진

2 **(MSP*)**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 의장국으로서 **주요사업 활성화** 및 **신규사업 확대** 논의를 주도하고 **우리기업 지원 강화**

* **M**inerals **S**ecurity **P**artnership

○ **기존 사업 성과 창출*** 가속화 및 **신규 MSP 사업**** **확대** 검토

* 탄자니아 Mahenge 흑연사업: MSP 최초 성과사업으로 집중 추진
** 한국 상동 텅스텐 사업(캐나다 Almonty社 투자), 아르헨티나 Sal de Oro 리튬 사업(포스코 투자) 등 편입 검토 가능

○ 우리 기업이 투자 **프로젝트**의 MSP **사업 편입 추진** 및 우리 기업 **진출 가능 사업 발굴 확대**

* 희토류 재활용 기술 선진국(영국 등) 협력, 몽·베·중앙아·아프리카 등 협력 사업 검토

3 **(국제금융기구) 신탁기금을 활용**하여 개도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**정책 수립** 및 **역량 강화** 등 지원

○ 개도국의 관련 **정책 개발** 및 **컨설팅 사업·공무원 연수** 등 지원

○ 무상 지원을 통해 발굴된 광산 등의 본격 개발 사업에 **한국 기업이 참여**하는 경우, 국제금융기구와의 **협조융자** 등 추진

Ⅳ. 추진 기반

(1)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 공급망안정화 위원회				
ㅇ 개별부처 소관 공급망 관련 주요정책 조율				기재부 (관계부처)
ㅇ 3개 전문위 역할 및 기능 강화				
2 공급망 3법				
ㅇ 공급망위·소부장위·자원안보협의회 간 연계 강화 위한 통합워킹그룹 구성				기재부 (산업부)
ㅇ 개별법률 근거 시스템간 연계 강화				기재부 (관계부처)
3 민관협력 네트워크				
ㅇ 수출입은행 내 "공급망 분석팀" 신설				기재부 (수출입은행)
ㅇ 공급망정책연구포럼 개최				기재부
4 공급망 싱크탱크				
ㅇ KDI에 공급망 전담연구조직 마련				기재부 (KDI)

1 **(공급망안정화 위원회)**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한 **공급망 관련 정책**의 **총괄·조정 등** 공급망정책 **컨트롤타워 기능 강화**

○ **공급망위원회**를 통해 **개별 부처 소관 공급망 관련 주요정책** 조율

○ **❶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전문위, ❷비축전문위, ❸대외경제전략 전문위** 등 **3개 전문위원회** 역할 및 기능 강화

- 공급망위원회 상정안건 **사전 논의·검토**, 분야별 **신규 논의 필요** 과제 및 정책 발굴, 각 부처 **비축예산 사전 논의** 등

2 **(공급망 3법*)** 공급망 정책간 **일관성** 및 **정합성을 제고**하기 위해 공급망 3법 관련 **협의·조정기능 활성화**

* ①공급망안정화법(위원장: 경제부총리), ②소부장특별법(위원장: 경제부총리), ③자원안보특별법(위원장: 산업부장관)

○ **공급망안정화위원회,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** 및 **자원안보협의회** 간 **연계**를 **강화**하기 위한 **통합 워킹그룹*** **구성**

* (예)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,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·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대화채널 마련 등

- **워킹그룹**을 통해 **정책 우선순위**를 **공동설정**하고 **기본계획** 등 **주요 정책 수립**시 **협의채널**로 활용

○ 개별 법률에 근거한 **조기경보체계·시스템*** **간 연계**가 가능하도록 **시스템 설계 초기단계**부터 **협업 추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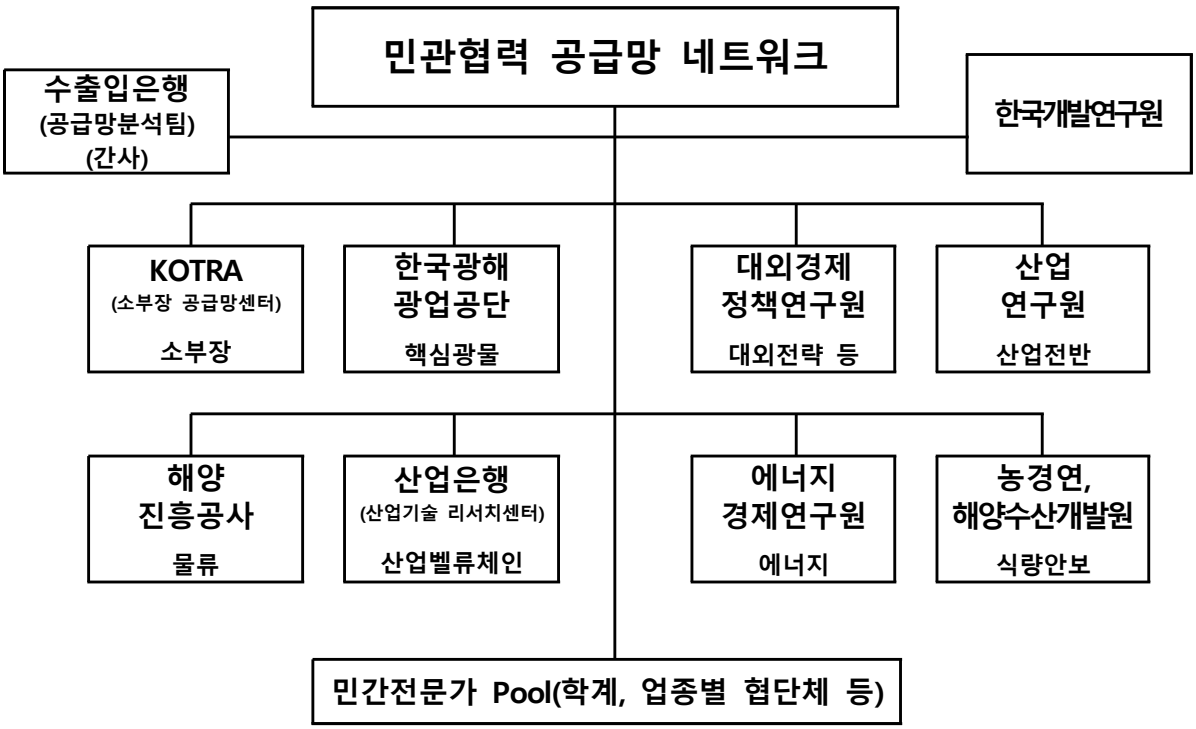
*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, 자원안보법상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

3 **(민관협력 네트워크)** 공급망 **연구·분석*** **기능**강화를 위한 **민관 협업체계 마련**

* 산업별 공급망 글로벌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

○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단 내 "**공급망분석팀**"을 **신설**하고, **민관 협력 네트워크 간사 역할** 수행

○ **공급망정책연구포럼** 개최 등을 통해 **학계·산업계 인사**들간 **네트워크** 구축을 활성화



□ **(공급망 싱크탱크)** 글로벌 공급망 규범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정책 수립·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**KDI에 전담연구조직 마련** 추진

○ **중장기 지속발전 전략**과 **공급망 정책 정합성**을 유지할 수 있도록 **산업·기술·대외 정책** 등 종합적 공급망 정책연구 추진

(2)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재·부품·장비 특별회계

추진 과제	추진 기한 '25	'26	'27	소관부처
1. 공급망안정화 기금				
1 지원규모				
○ 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				기재부
○ 기금채권발행(국가보증)을 통한 재원 마련				기재부
2 지원대상				
○ 선도사업자 중심 + 관계부처·공급망안정화 위원회·기금운용심의회 인정하는 사업				기재부
○ 선도사업자 우대금리 적용, 중소기업 추가 우대				기재부
3 지원방법				
○ 직·간접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에 기금 투자 전담조직 신설				기재부
○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 및 간접투자 상품 지속 발굴				기재부
3 국내·외 정책금융기관간 연계				
○ 「공급망 우대 보증프로그램」 신설				기재부
○ 「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」 설치				기재부
○ 美 DFC, 日 JBIC, 濠 EFA 등 해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				기재부
4 운용기반 구축 및 리스크 관리				
○ 기금지원 면책제도 마련(법령 개정)				기재부
○ 기금 조성기간 완화(법령 개정)				기재부
○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				기재부
2.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				
1 일몰 연장 및 규모 확대				
○ 소부장 특별회계 설치·운용 기한 연장				산업부 (기재부)
○ 회계규모 확대 검토				
2 명칭 변경				
○ "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"로 명칭 변경				산업부
3 용처 다변화				
○ R&D 중심의 지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으로 용처 확대				산업부·기재부
4 공급망기금 연계				
○ 소부장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간 연계 강화				산업부·기재부

1 공급망안정화기금

1 **(지원규모) 향후 3년**간 기금 공급규모를 **30조원으로 확대**하고 **첨단산업·자원안보·필수재·물류** 등 **공급망 핵심분야** 중점 지원

○ **공급망채권 국가보증***을 통해 **연간 10조원**의 **기금 재원** 마련

* `25년도 10조원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계류중

2 **(지원대상) 선도사업자**를 중심으로 지원하되, **관계부처·공급망안정화위원회·기금운용심의회**가 **인정**하는 사업*도 지원

* 선도사업자의 **협력기업**, **부처별 지정사업**, **공급망위원회·기금심의회 의결 사업** 등

○ 선도사업자는 **우대금리 적용** 등 중점 지원, **중소기업**인 경우 **추가 금리우대** 및 **수수료 경감**

3 **(지원방법)** 대출, 보증 외 **직·간접 투자 확대** 등 지원수단 **다각화**

○ 수출입은행에 **공급망 직접투자 전담조직**을 **신설**하고 **심사역량** 강화, 해외 **핵심광물 확보** 등 **지분투자 수요**에도 **적극 참여**

○ **민간 전문성**을 활용한 **1조 원*** 규모 **공급망 특화 사모펀드** 조성('25년 상반기중 결성) 및 **주요 산업**별 **간접투자** 상품** 지속 발굴

* **1조 원** = **공급망기금 1천억 원** + 수은 1천억 원 + 민간출자 8천억 원

** **(예)** 기업의 **해외 공급망 확보**(지분확보, 법인설립 등)에 **기금**이 **공동으로 투자**하는 **프로젝트 펀드 조성** 등

○ **창의적 기업지원 수단 개발**을 위해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**자문단 운영**

4 **(기관간 연계) 국내외 정책금융기관** 등과의 **전략적 협업체계**를 구축하고 **공동지원** 등을 통해 **자금지원 효과 제고**

○ **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***를 통해 **연계·협업** 추진

* 수은(간사), 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, 무보, 해진공, 코트라(소부장 공급망센터), 중진공

- 중소·중견기업 대상 **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**하는 **'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' 신설**하여 기업의 **여신 확대** 및 **금융비용 경감**

〈 **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**(안) 〉

❶ **지원대상** : ①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 중소·중견기업, ②선도사업자의 협력기업

❷ **보증규모 : ('25년) 최대 2천억원 → ('26년~) 보증규모 확대 추진**

- **우대 보증 대상기업**에게는 **별도 우대금리**를 적용하여 **기업 금융비용 경감**

- **여신한도** 등으로 **기금 단독지원**이 곤란한 **대규모 사업 공동지원***

* **(사례)** 전구체 생산설비(A社) **7천억원** 공동 금융지원
(기금 1천억 + 수은 1천억원 + 산업은행 2.5천억원 + 국내 민간은행 2.5천억원)

- 수출입은행에 「**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**」를 설치하고 **공급망 금융 프로그램** 종합 안내*

* ①프로그램 연계·협업 발굴, ②컨설팅 및 프로그램 주선, ③현황·실적 등 통합관리 등

○ 美 **DFC**, 日 **JBIC**, **호주 EFA** 등 해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광물 확보 등 **공동투자 프로젝트** 발굴·추진

5 **(운용기반) 제도 정비** 및 **리스크관리**를 통한 **안정적 운용기반** 구축

○ **고의** 또는 **중대한 과실**이 없는 **기금지원**에 대하여 그 **책임**을 **면제***함으로써 **고위험 사업**에 대한 **적극적 지원 기반** 마련

* '**기간산업안정기금**'의 경우 산업은행법(제41조)에 **면책조항** 기 도입

○ 기금지원·재원확보의 **불확실성 해소** 및 **기금채권**의 **시장 경쟁력** 확보를 위해 **기금의 조성기간* 제한 완화**를 검토

* 공급망안정화법 부칙 제2조 : 기금의 **조성기간**을 **5년**(~'29.6.27)으로 한정

○ 기금 **손실관리기준금액** 및 **투자한도**를 설정하고, **5대 리스크**(신용·환·금리·유동성·운영)에 대한 **맞춤형 지표** 설정·관리

2 소재·부품·장비 특별회계

1 **(일몰 연장 및 규모 확대)** 소부장 특별회계 **설치·운용 기한*** 연장(소부장 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, '24.12) 및 **회계규모 점진적 확대**

* (現) '24.12.31일 → (改) '29.12.31일

2 **(명칭 변경)**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를 위해 "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**"로 **명칭 변경**

* (現)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

3 **(용처 다변화) R&D·기반구축 중심**의 소부장 특별회계 지원 분야를 **공급망 안정** 및 **수입 위험 완화**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

4 **(공급망 기금과 연계)** 정부 **출연·보조 중심**의 특별회계와 **융자·지분투자 중심**의 공급망 기금을 **사업 단계별로 상호 연계**

【 소부장 특별회계-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 지원 방안(예시) 】

구분	국내 생산				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
사업 단계	기술개발	⇨ 시제품·성능평가	⇨ 신규·증설 투자 등	⇨ 국내 생산	
출연·보조 금융	소부장·공급망 특별회계		공급망 안정화 기금		소부장·공급망 특별회계 공급망 안정화 기금

소부장 및 공급망 특별회계
(재원 : 정부 예산)

공급망안정화기금
(재원 : 정부 보증 채권, 상환의무)

지원분야	지원수단
소부장·공급망 R&D 소부장 기반구축 공급망 안정화지원사업	출연, 보조 등

⇄

지원분야	지원수단
국내외 생산시설 투자·운영 기술도입·개발·개량 등 상용화 국내외 기업 지분인수 물자 및 원재료 도입·확보	대출 보증 투자

각 재원별 지원대상 기업·사업 정보 교류를 통한 원활한 연계지원 기반 조성